

제418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11월20일(수)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6.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
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
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9)
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
10.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3)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15.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16.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에 대한 공청회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상정된 안건**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 3
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2) .....	3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	5
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 .....	5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	7
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9) .....	10
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 .....	10
10.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3) .....	14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	20
6.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 .....	23
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 .....	23
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	25
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	27
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	30
15.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	32
16.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에 대한 공청회 .....	33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0시07분 개의)

○ 소위원장 조경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소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에 대한 공청회입니다. 오전에는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공청회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차관님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입니다.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법안 심사에 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정 등 해양수산 관련 각종 정책을 적기에 입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3)

(10시08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 해양수산부 소관입니다.

자료 3페이지, 해양치유 관련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을 사업화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술, 자금, 창업 컨설팅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양치유·복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지원 시에 구체적인 선정 방식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의견 박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수부차관님 의견 있으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82)

(10시14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2항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7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의 개관 준비 및 범인 설립과 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하단에 있는 소위원회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심사 시에 해양과학관 명칭에 지역명을 병기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해수부에서 이에 대하여 자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내용입니다.

기관 명칭 변경을 설명드리면 국립해양과학관을 국립울진해양과학관으로, 새로 신설되는 국립미래해양과학관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맞추어 법률의 제명은 현행과 같이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수정의견은 정부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 부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의 부칙에서는 설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관 작성, 설립 당시의 해양과학관 관장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준비하려는 취지입니다.

설립위원회는 공포 후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의견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시행일과 관련하여 특정일을 명기하기보다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 국립미래해양박물관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위원님, 혹시 제주도에 이런 것 있습니까?

○**문대림 위원** 지난번에 약속하셨잖아요, 제주도에 하나 하자고.

○**소위원장 조경태** 제주도가 필요한데……

○**주철현 위원** 아니, 여수가 더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여수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저희 부산에 보면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이 내륙 저 위에 있거든요. 산꼭대기 밑에 있는데, 산 언덕 언저리에 있는데. 취지는 참 좋잖아요.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인데 이게 바

다 쪽에 없고 육지 저쪽에 있으니까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정부 측, 제 이야기가 이해되지요? 이게 충청북도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청주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래서 이게 청주에 과연 맞는 시설인지, 바다에 있어도 잘 안 가는데……

그걸 시설 이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렇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소위원장 조경태 서울·경기 이 내륙에 있는 분들은 한 번씩은 다 가 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설만 지어 놓으면 괜히 그냥 그 지역 동네 박물관으로 전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가 있는 쪽에, 섬이 있는 쪽에 이런 테 하는 게 위치적으로 맞지 않은가 이 생각을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륙 쪽에는 유사한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좋은 시설들이. 그런데 바다 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인프라가 많이 약하니까 바다 쪽을 좀 많이……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동 시설은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바다가 없는 충북 지역에 바다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건립이 시작됐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위원장 조경태 역으로 치면 육지에 있는 것을 바다 쪽으로 그런 시설을 달라고 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지역 특성에 맞도록 하는 게 더 예산의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이니까 대신에 예산 낭비가 안 되도록, 정부에서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많은 이용객들 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잘 지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2)

(10시16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7페이지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구 의원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양오염방지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현행은 민간단체 지원으로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민간단체에 대한 체계적 지원방안 마련 및 민간단체 수행 해양환경 보전·관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저희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시거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원님.

○**주철현 위원** 여기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임호선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과 관련돼서……

차관님, 실제 지금 일선 바닷가에 방치된 선박들이 아주 큰 문제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주철현 위원** 정말입니다. 여수도 국동 다기능항, 우리나라 최대 어항인데 여기에 선주들이 사실상 배를 그냥 버리다시피 해서 세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지자체에다가 위임을 하는데 실제 지자체는 또 이게 주민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출직 단체장들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해경이 이 부분에 좀 나서서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관리하고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조사해서 일종의 불이익을 주고 이런 철저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게 되면 해수부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항만시설, 어항시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해 두고 있는 상태에서 자꾸 계류시설 이런 것만 늘려 달라고 민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좀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경에서 단순히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개별 어선들의 확인·점검권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해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해경들의 업무 권한을 좀 제대로 법정화하고 이것을 해경의 주요한 업무 중의 하나로 하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제도적인 방안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주철현 위원** 빨리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임호선 의원님 안도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21페이지 간단하게만 설명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선 의원님 안은 해양오염 사전방지를 위한 장기계류·방치 선박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장기계류선박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에 출입해서 확인·점검하거나 서류나 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계류선박 등 해양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발생원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행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현장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는기는 합니다 마는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 연 1회 시행할 수 있는 정기조사의 성격이고,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는 이미 상황이 발생한 이후여서 해양오염을 사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10시21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5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자료 28페이지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낚시어선의 승선자명부는 사본보관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출항하는 경우에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승선자명부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3개월간 낚시어선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승선자명부 중에서 전자적 형태로 작성된 것은 사본보관의무에서 제외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낚시해(海) 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해수부에서 개발·운영하는 낚시어선 승선자명부 관리시스템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 앱을 이용한 전자적 형태의 승선자명부에 대해서 사본을 출력해서 보관해야 되는지 해석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서는 사본보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은 용어를 통일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제가 좀……

○**소위원장 조경태** 예, 주 위원님.

○**주철현 위원** 저도 이 법안에는 100% 동의하는데요.

차관님, 지금 이런 문제만 하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낚시어선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지요. 왜 그런 것은 않고 이렇게 사소한 것만 하십니까.

일단 낚시어선과 일반 어민들, 수산업자들과의 여러 가지 분쟁이 심각한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낚시어선업을 어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어업으로 보면 안 되고 해양관광업으로 분류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경쟁력도 갖추고 또 규제도 받고 특혜를 안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어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낚시어선업 하는 어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원래는 어민들이 어한기에 일부 수익을 위해서 낚시어선업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주종이 바뀌어서 일반 외부인들이, 어민들이 아닌 분이 배를 사 가지고 그냥 낚시어선업만 주종으로 하고 계세요. 그런 과정에 면세유도 쓰게 되고 또 기왕에 바다에 있는 여러 가지 어족자원들을 고갈시키고 있고 쓰레기 함부로 버려서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분류도 그렇고 또 바다를 저희들이 보전하고 제대로 정비를 하려면 바다낚시와 관련돼서는 허가제 같은 것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관리가 되고 바다 오염도 막을 수 있고 또 어족자원 고갈도 막을 수가 있는 것 이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에 어선들이 휴어기에 겸업을 하게 하면서 소득을 보전하는 그런 취지로 낚시어선업이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말씀대로 그렇게 낚시 쪽은 레저 쪽으로 가면서 제대로 산업적으로 정착하고 또 해양환경도 보호하고 하는 측면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주철현 위원** 제가 맞는 것 공감하셨으니까 언제까지 개선안을 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하여간 저희들……

○**주철현 위원** 안 되면 용역을 좀 해 보시든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한번……

○**주철현 위원** 용역을 해서, 포괄적 용역사업비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해서……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려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는 해법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계실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기존에 어선 하시던 분들이 그런 우려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감안하셔서 하셔야지 안 그렇게 되면 TAC 같은 것 해 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여수 같으면 350척 낚시 어선들이, 주말이면 이게 20명씩 태우면 몇 명입니까? 7000명이 풀려 가 갖고 그냥 짹쓸이해 가요. 어민들이 난리 치는데 해수부나 시는 모른 척하고 그리고 있어서 참 답답하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래서 저희들이……

○주철현 위원 그래서 근본적인 해법을 좀 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낚시업에도 TAC를 도입하는 것도 저희들이 같이 명행해서 하려고 합니다마는 중장기적인 방안을……

○주철현 위원 낚시 어선은 TAC 하지 마시고 면허제 하세요, 면허제. 그게 더 중요해요. 면허제 플러스 TAC 하든지.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 위원님, 7000대가 갑니까?

○주철현 위원 350척이 있는데요 20명씩 태웁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350척.

○주철현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니까 이게 여수를 너무 많이 홍보를 한……

○주철현 위원 그게 아니고 낚시 어선이 정말……

○소위원장 조경태 아니, ‘여수 밤바다’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게 로망이 되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주철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낚시 어선들이 우리 어민들의 가장 큰 하여튼 간의 공공의 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예.

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에서 어쨌든 어가수입을 위해서라도 낚시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이 정박이라든지 배 빌리고 할 때 그것을, 그 각 지역별로 어촌계가 있거든요. 어촌계나 수협을 통해서 어가수입에도 약간 일정,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와서 막 바다 헤집고 다니고 자기들 즐기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어민들한테도 보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런 뜻 맞지요, 주 위원님?

○주철현 위원 예, 그런 취지 포함했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것 포함해서 그렇게 좀……

여수가 정말 핫한 지역이네요.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6항·7항은 이양수 위원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리다가……

바로 8항·9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8.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9)

### 9.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7)

(10시28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하고 조경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입니다.

자료 51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안 내용입니다.

1-(1) 어선건조·개조업의 등록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어선건조·개조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장비·인력 등 기준을 갖추어 해수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취소 등 등록제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어선건조·개조업은 기준이 없어 업계가 전반적으로 영세하고 어선의 불법 건조·개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제를 마련해 어선건조·개조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2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등록대상이 되는 어선건조·개조업의 범위에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포함하고 있는데 해수부령으로 위임되는 수리의 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이를 보완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어선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2페이지 하단 두 번째 개정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은 어선건조·개조업자가 어선검사, 건조검사를 받은 어선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임의 개조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어선소유자에 대해서만 어선의 현재 상태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은 어선건조·개조업 미등록 영업 등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등록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한 조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선소유자 외에도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해서도 어선건조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가 개정안에 의하여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해서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개정사항으로 부칙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그리고 경과조치를 두어서 이 법 시행 당시 어선건조·개조업을 하고 있는 자는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업계의 영세성을 고려할 때 경과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으로 무허가 어선건조·개조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입니다.

조선업체가 현행법 제8조에 따른 어선건조·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서 건조·개조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조·개조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업체에 대한 관리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은 하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안에서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 ‘어선건조·개조를 발주받은 자’를 ‘어선건조·개조업자’로 수정하고 일부 문건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56페이지에 수정의견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이하 자료는 조문자료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68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내용은 정부안 제12조의2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어선건조·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간 전문성과 적정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가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함에 따라 제기된 어선의 안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이게 1년 동안 이 법 시행 유예기간을 두면 바로 시행해도 되지 않나요? 기왕에 무등록업자들 등록의무를 2년 동안 유예해 준다는 것은 좀 과도한 면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무등록업자들에 대해서는 나머지 여러 가지 의무조항도 저희가 강제하거나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법을 시행기간을 바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유예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선건조하시는 업체들을 살펴봤을 때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등록제를 두는데, 또 그 부분들이 저희들…… 바로 이 자격요건을 갖추는 데 1년이 충분할까 그런 우려들이, 그런 현장의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2년으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나머지 멀칙조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적용할 수, 시행 후 2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네요. 등록한 기존의 업체는 적용을 받고……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주철현 위원** 안 한 업체는 적용을 않고,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아니, 기왕에 등록을 하든, 수리업 같은 것 등록을 하는 데 뭐가 이렇게 큰 요건이 필요합니까? 서류만 갖춰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어, 등록하는 데 뭐가,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등록하는 데 뭐가 그렇게 복잡해요?

법 개정안 공포되면 1년 뒤에 시행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3년이나 기간을 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뭔 일 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일단 저희들이 등록기준 같은 것들이 아직 조금 정리가, 그 부분은 하위법령에서 규정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간들 해서 이제 1년 후에 시행하면 그리고 나서 무등록업체들이 영세한 업체들이 등록기준을 갖춰서 할 경과기일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하고 플러스 1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나요?

○**전문위원 최선영** 그러면 경과조치를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좋습니다.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차관님, 68쪽에 보시면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로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건조·개조에 이전도 포함이 되는 개념인가요? 이전.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조선소가, 애초에 조선소가 설치될 당시에 예산은 받았다 왜 있는데 그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이 된단지 아니면 상가가 형성이 돼서 조선소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옮겨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전혀 혜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와 조선소가 뒤섞여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관광단지 내에도 조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문구상으로 봐서는 건조·개조에 포함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꼭 옮겨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어촌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조선소가 또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위치로 봐서는……

○**소위원장 조경태** 위치를 옮겨야……

○**서천호 위원** 옮겨야 되는 사안인데 사실상은 지원책이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조문에 이전까지도 포함시키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그 부분은 저희들이 69쪽에 보시면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일정구역을 어선건조·개조업 진흥단지로 설정해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근으로 좀 집적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천호 위원** 어선…… 이게 진흥단지로 지정이 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남해 미조항이나 상주항 같은 경우에는 어선이 출입하는 게 많잖아요. 많은데, 조선소가 사실은 마을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이전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어민들 그 주변 주민들은 강력하게 지금 이전하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하고 조선소 업체 쪽하고 그냥 협의를 해서 나가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행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조문상으로 봐서는 어쨌든 어선건조,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개조도 그 자리에서 개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포함……

○**소위원장 조경태** 서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고요.

정부 좀 봐 주십시오.

69쪽 개정안에 보면 제12조의2입니다. 여기에다가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하여 어선의 개발, 시설의 이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까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다 만족……

서 위원님, 만족하십니까?

○**서천호 위원** 오케이. 그렇게 해 주시면……

○**소위원장 조경태** 오케이 나왔습니다.

○**송옥주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

○**소위원장 조경태** 예, 송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 법과 관련돼서 등록제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개정안 내용 보니까 등록대상이 되는 어선건조와 개조업의 범위에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령으로 위임하는 수리의 범위가 좀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 예측 가능하게 영으로다가 만들 때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해수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수리에 관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송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52페이지의 수정의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이 법이 참 좋은 법 같은데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법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까지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0.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3)

(10시41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이 제정안은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자료 71페이지 목차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의 구성이 총괄검토,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 관계부처 의견 제시 그리고 이전 국회 심사경과와 제정안 비교, 5번 조문별 내용검토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7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검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제정안의 발의 배경 검토입니다.

현행 법체계에서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양관할구역과 관련한 지자체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쟁해결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상경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조업구역 등 해상경계 위반으로 어업인이 입건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해양관할구역에 대한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확정

의 기준·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73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과입니다.

해상경계 설정과 관련하여 그간 몇 차례의 입법 추진이 있었습니다마는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스에 있는 23년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 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거쳐 대안을 의결하였으나 전체회의 의결 단계에서 일부 의견 개진으로 계류된 바 있고 이 제정안은 21대 국회 소위 의결 대안에서 일부 사항을 조정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74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입니다.

제정안은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에 관한 법률안을 제명으로 하고 있고 5장 24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정안의 구성 체계는 제1장 총칙, 제2장에서 해양관할구역 확정의 원칙 및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서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으로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선 등 9개의 확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관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합의의 반영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장 해양관할구역 확정심의위원회 장에서는 위원회를 해수부장관 소속으로 15인 이내로 두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해양관할구역 확정안 등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제19조에서 확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을 두어서 지자체장이 확정합의안을 의견수렴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해수부는 이를 반영하여 확정안을 작성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1조에서는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두어서 현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서는 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확정을 두어서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해양관할구역 확정 업무체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77페이지, 관계부처 의견 제시 사항입니다.

21대 빌의안 관련해서 21대 빌의안 의견조회 당시 행안부에서 확정심의위원회 위원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중 행안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정안에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해양관할구역 확정추진단에 대해서 기존 조직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직 보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에서 13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78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국회 심사 경과와 제정안의 비교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목차에서 21대 논의 사항과 제정안 관련 사항인데요.

21대에서 세 차례의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거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마는 군산-김제시 간의 새만금 매립지 관련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매립지 귀속 결정 전에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유예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정안 부칙 제4조에서 보완하도록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정안 부칙 제4조는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한 유예조치)라는 조문을 두어서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매립지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해역은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관할구역 획정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8페이지 하단 내용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제정안 관련 사항입니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첫 번째 사항으로 해양관할구역 획정 방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신청하는 외에도 해수부장관이 계획 수립을 통해서 관할구역을 설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자체 장의 신청을 우선하고 보충적으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정안에서는 해수부장관의 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사정 변경에 따라서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허용할지 여부입니다.

주민 불편 등에 따라서 관할구역 변경 신청을 허용할 경우에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제반 사정 변화가 있는 경우에 변경 신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있었습니다.

제정안에서는 22조 제1항 3호에서 획정한 해양관할구역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기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박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세 번째 사항으로는 지자체 간 합의안 반영 관련 사항입니다.

지자체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를 재량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합의안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에 대한 각각 의견이 제시된 바 있는데, 제정안 제19조제2항에서는 해수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획정합의안을 반영하여 획정안을 작성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합의안을 존중하면서도 해수부장관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하 80페이지부터는 조문별 내용검토 사항입니다.

조문별 내용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내용입니다. 총칙 사항에서 목적과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81페이지, 수정의견 사항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 규정에서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지금 정의 규정에 기점이라는 용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기점은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의 하나로서 등거리·중간선을 적용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해수부에서 수정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은 기점이란 육지와 해양을 구분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점으로서 등거리·중간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점을 말한다고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서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두었습니다.

다음은 5-2 부분입니다. 제2장 해양관할구역 확정의 원칙 및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확정의 기본 원칙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 현재에서 제시한 내용 등을 반영하여 제5조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5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이나 관련 분쟁의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이 규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해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정을 마련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면 제6조는 (해양관할구역 확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확정 기준 역시 현재에서 결정례 등에서 적용 기준으로 제시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정 기준이 우선되는 것은 아니고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5-3, 제3장 내용입니다.

해양관할구역 확정 심의위원회와 관련하여 안 제9조부터 12조까지의 내용인데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임기는 3년으로 그리고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 출석 개의하고 출석 3분의 2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 추진계획, 확정안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제13조 해양관할구역 확정추진단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안부 의견 제시가 있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내용은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장은 해양관할구역 확정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89페이지 상단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기본·추진 계획을 해수부장관이 수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조사 및 측량, 확정안의 마련, 관할구역 결정, 불복 등의 절차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조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제20조 확정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수정의견 제시 사항입니다.

9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확정안의 심의·의결 관련하여 해수부장관은 관계 지자체장이 제출한 확정합의안을 반영하여 확정안을 작성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조문을 보시면 위원회가 해당 확정안 및 확정합의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어서 확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내용입니다.

92페이지, 제22조 신청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확정이 중요한 조문입니다.

이 내용은 지자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각 호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해양의 이용, 관리 및 보전에 있어서 관할구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사항은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 번째 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지자체의 기점 변경 등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문에서는 지금 제2항에서 절차에 있어서 제17조부터 21조까지를 준용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취지는 지자체 신청의 경우에도 조사·측량, 획정안 작성, 지자체 획정합의안 제출 등을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준용한다’라는 문구를 ‘따라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부칙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에 있는 박스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정안의 시행일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경과조치의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법원의 판결 또는 현재의 결정으로 확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확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경과조치 내용입니다.

유예조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항을 두고 있는데 먼저 현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현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분쟁해역에 대해서는 현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확정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예조치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결정 중인 해역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된 후에 구역을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하 96페이지 하단 부분의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간 지자체 간의 해상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령 규정이 없어서 지자체에서 명확한 자치권 행사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조업 구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구역 등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경하는 주철현 의원님께서 지자체 해양 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법률안은 지금까지 현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정립된 경계 획정 기준을 반영하고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한 획정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한 해상 경계 분쟁 해결이 가능해지고 지자체의 자치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문 위원님.

○**주철현 위원** (손을 들)

○**문대림 위원** 먼저 하십시오.

○**주철현 위원** 아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몇 번 이야기를 해서 해수부에서 21대 때 자체 용역을 거쳐서 용역 결과를…… 그때 부산의 안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셨고 저도 의원 발의를 해서 그 두 법안을 소위에서 벼무려서…… 거의 소위는 통과됐는데, 상임위 본회의 통과 직전에 아까 말한 김제·군산 간의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이 있어서, 이게 매립이 있게 되면 매립지역의 소유권, 뭐니까? 매립지 육지의 경계 확정에 따라서 바다로 달라져야 되는데 기왕에 것만 하게 되면 안 맞는다라고 계속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못 시키고 유예 됐다가 다시 들어와서 22대 때는 해수부에서 나서서 구나 김제시하고 군산시 양측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매립지 육지 소유권 경계가 확정된 다음에 그것을 반영해서 해상 경계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법안을 내게 됐는데요.

○소위원장 조경태 주 위원님.

○주철현 위원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통과시키지 말까요?

○주철현 위원 아닙니다. 통과를 시켜 주셔……

○소위원장 조경태 말씀을 줄이셔야 됩니다.

○주철현 위원 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 차관님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행사가 원활해 질 것이고 조업구역 점사용 허가 관련 얘기들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치권의 범위가 현행 법률하에서는 육상에만 미치지 않습니까?

자치권의 범위 해상에도 현행 법률안에서 미치지……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현법 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해상에도 자치권이 미친다……

○문대림 위원 미친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관할권이 미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계가 불 확정한 측면이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해상에도 미친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문대림 위원 지금 법률적·제도적으로 해상자치권을 명시한 법안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일단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한 것이 종전에 해상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그것을 자치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문대림 위원 그러면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게 되면 점사용 허가에 관한 일반적인 인 허가에 관한 내용이야 인정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족자원 관리나 조업 허가에 관한 내용들도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그것은 관계 법률과 법령과, 또 그것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대림 위원 기본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문대림 위원 빨리 통과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혹시, 지자체가 좀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 경우를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참 난감한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보면 어항이 좀 있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어항은 나름대로 대화가 되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은 또 그게 좀 잘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약간 염려는 되지만…… 하여튼 조율을 잘해서 너무, 지자체에서 잘하는 부분은 계속 강조하지만 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조금 나서는 것도 열어야 되지……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정 필요한 부분은 또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알겠습니다.

이 법안은 아주 역사적인 법안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10시59분)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102페이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내용입니다.

개정 내용은 국가가 해양폐기물 및 오염퇴적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단체를 지원하는 경우에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섬지역은 해양쓰레기 실태 파악이 곤란하고 인력·장비 부족 등으로 해양쓰레기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단체의 섬지역 내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섬지역의 해양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여기구 의원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섬지역 그러면 연륙·연도된 요즘 섬이 많은데 그것도 섬으로 칩

니까? 아니면 거석에 따라서 10년 지나기 전에는 섬으로 쳐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서 저희들 섬지역 하게 되는데요.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그 법 그 규정에 따르면 연륙·연도된 지 10년간은 섬으로 쳐주잖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는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섬은 연륙·연도된 섬은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법 취지에 따르면. 우선지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다리가 없을 때 그게 섬이지, 다리를 내면 그때부터는 섬 아니잖아요, 이 법에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일단 섬 발전 촉진법이 연륙교가 있지만 또 아직까지는 이용이 좀 적어서 일단 10년의 경과규정을 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우선적으로는 당연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륙교가 없이 진짜 서해상에 떨어진 도서나 이런 부분이 당연히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이 될 겁니다마는 굳이 섬 발전 촉진법과 달리 또 규정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이게 우선지원하는 건데 연륙·연도된 지 10년 동안 다리 없는 섬하고 똑같이 우선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맞잖아요. 연륙·연도교가 없을 때 우선지원한다는 건데. 연륙·연도교 10년 동안 똑같이, 같은 대접 한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외로 하자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주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10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시면 어기구 의원님 안에 보시면 중간쯤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내용에 이 부분을 넣으면 된다는 거지요?

○주철현 위원 예, 섬에다 팔호 치고 연륙·연도된 섬은 제외한다고 하면 어떨까.

○소위원장 조경태 또 하나가 103페이지 보시면 7항 후단, 제일 밑에 보시면 ‘제1항에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에, 여기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돼 있거든요. 이 대상을 할 때 지금 주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담아 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간 법에 따라서 섬 그래 버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륙·연도된 지 10년 미만의 섬도 지금 무조건 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섬 할 때 팔호치고 섬지역하면 거기다가 연륙·연도된 섬은 제외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소위원장 조경태 그런데 주 위원님.

○주철현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연륙교, 저 호남 쪽에 가면 섬 연륙교로 연결돼 있지만 섬 아닙니까? 그것?

○주철현 위원 그런데 육지와 연결되면 그것은 섬 아닙니다. 바닷가이지요.

○소위원장 조경태 아닙니까? 육지로 보십니까?

○주철현 위원 예, 육지이지요, 육지.

○소위원장 조경태 그래도 지방을 좀 지원해 주는 거니까.

○주철현 위원 아니,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선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니까 우선지원해서……

○소위원장 조경태 예, 맞습니다.

제주도는 섬이지요? 제주도는 섬이니까 큰 섬이니까……

○주철현 위원 예, 이것은 연륙·연도가 아니니까……

○문대림 위원 도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섬이 아니고, 도서지역 지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빼 버립니다, 섬에서 빼 버립니다. 지원대상에서 빼버리고.

○소위원장 조경태 저도 그거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대림 위원 그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섬 취급받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에서는 제주도도 큰 섬으로 넣어 주십시오. 연륙교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지금 주 위원님 말씀의 고민은 연륙교는 약간 육지와 연결됐다고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두텁게 지원하자 저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저희들은 일단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중재 의견으로 내셨듯이 저희들 대통령령에다가 구체적인 대상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주 위원님 말씀대로 연륙교는 일단 제외하되 전체적으로 법에서 굳이 섬 발전 촉진법과 달리 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제주도도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좀 지난 얘기인데요. 어족자원 관리, 조업허가 이것들은 지금 해수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그 부분은 이제……

○문대림 위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차관님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다 이양해 줘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다른 법령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대림 위원 다른…… 최종적으로 답변한 것을 속기록 보세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기본적으로 다른 법령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했습니다.

○문대림 위원 또, 또……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6항·7항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하고 이원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해양수산부 법안이고요.

그다음에 해양경찰청 법안은 좀 이따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

**7.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0)**

(11시07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의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자료 33페이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제8조 1항에서 어선이 출입항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어선소유자 또는 선장이 신고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되 해경청장이 정하는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특정해역이나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등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정상가동하는 경우에도 신고기관에 별도로 신고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춘 어선이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출입항 신고를 한 것으로 봐서 별도 신고의무를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이 출어 시마다 직접 신고기관에 방문해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일부지역의 경우에 어항 인근에 특정해역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단순 이동하거나 다른 해역으로 출어하는 경우에도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불편이 있는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반영되는 경우에 정부에서는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내용입니다.

이원택 의원안 제45조 관련된 사항입니다.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9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선원감독관이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어선원감독관의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개정사항으로 이원택 의원안 내용입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업무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 직원의 검사·지도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해수부장관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수협중앙회 등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안전공단 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어선에 출입해서 검사·질문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해수부 공무원만으로는 다수 어선에 대한 보건 감독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공단 직원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어선에 출입하고 검사하는 내용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므로 허용되는 행위를 법률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정의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수정의견으로는 ‘다음 각 호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로 각 호에서 재해예방 기준의 이행여부 조사, 위험성평가의 실시 이행여부 조사, 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이행여부 점검, 중대재해 원인조사 지원 업무 등으로 세부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차관님, 이게 이 법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사경법도 같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사법경찰관 관련 법도 같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주철현 위원** 그것은 법사위로 제출돼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법사위로 일단 제출은 됐고 아직 상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주철현 위원** 예.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범위에 관한 법률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맞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송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원택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 시행하는 부분이 보니까 내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게 다른…… 여기 저희 법안소위에서는 이게 의결되더라도 지금 다른 데 걸려 있는, 법사위나 그런 데 걸려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가 되고 있으신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정원을 확보를 했고요. 이 부분 되면 저희들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러면 내년도 1월에 제대로 시행되는 부분들이 차질이 없는 거지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현재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법사위에 회부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소위원장 조경태 그래서 이게 빨리 통과돼야지 내년부터 시행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예. 저희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경찰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 법률안 심사를 위해 김종욱 해양경찰청……

청장님 나와 계시나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바쁘신데도 나와 계시네요.

출석하셨습니다.

청장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존경하는 조경태 해양수산법안소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 등을 반영한 법안심사에 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해양경찰청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수상레저, 선박교통관계, 수상구조 등 해양경찰 관련 각종 정책을 적기에 입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

## 1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11시15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2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심사 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주취 중 또는 약물 복용 상태에서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만 주취 중 조종 금지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일부 주취 중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하단에 유사 입법례로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 주취 중 운전 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전문위원의 검토 및 수정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청장님, 자전거 음주운전 하면 20만 원인데 이것은 100만 원까지, 좀 과한 것 아니에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해상에서 활동자 본인과 기구, 선박 안전을 위해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사고가 나면 자전거 사고하고 해상에서 여러 가지 미치는 사고가 굉장히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 위원님……

○**주철현 위원** 해상에서 사고는 오히려 바다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무동력은 사고 안 생겨요. 다치지 않습니다, 별로. 자전거는 타다가 넘어지면 본인도 그렇고 주변 사람 오히려 피해가 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별금도 아니고 과태료 하면서 100만 원…… 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자전거는 별금, 구류, 과료로 돼 있습니다.

○**주철현 위원** 별금이 20만 원 이하인데 과태료를 내면서 100만 원까지 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런데 통상적으로 약물 복용 상태 또는 음주 측정에 이렇게,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조경태** 10페이지 보시면 참고 사항을, 현행법 과태료 조항이 있습니다. 제 64조 보시면 아마 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입니다마는 1항의 두 번째 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시간 외에 수상레저활동을 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 한 1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나오니까 이 정도 수준을 맞춘 것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주철현 위원** 무동력이니까요. 동력인 경우에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무동력인 경우에까지……

○**소위원장 조경태** 무동력이면 서핑도 무동력이 되지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서핑할 때 술 드시고 하면 옆 사람 치기도 하고 안 좋습니다. 하여

튼 음주운전이나 음주 기구 작동 이것은 좀 엄벌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가 약간 관대한 측면이 있는데 주 위원님,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64조(과태료)에 의거해서 하는 거니까 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처벌이 되지 않는데 사고 이후에 측정을 했을 때 약물 복용이나 음주가 됐을 때는 엄격하게 해상에서도……

○**소위원장 조경태** 왜냐하면 서핑할 때 도구가 이게 날카롭거든요. 옆에 어린애들도 타고 하는데 어른들이 약주 드시고 하고 하면……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그런 걸 도입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그렇습니다.

사업장 내에서나 또는 사업장 외에서 이렇게, 바다에서는 음주에 대한 관용 이런 거는 조금, 또 레저 쪽에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혹시 또 의견 있으십니까?

그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3.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11시20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3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의 공간적 범위를 영해 및 내수로 제한하고 이 법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중요 용어인 ‘관제대상선박’과 ‘해양사고’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필요 한 입법 조치로 보았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다만 관제대상선박의 정의규정 중 관제대상선박의 중요 요건인 ‘선박교통관제 실시 대상이 되는 선박’이라는 내용이 용어에서 누락돼 있는바 해당 요건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교통 안전 정보 등 제공대상을 영해 밖 수역 중 해경청장이 해수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 즉 영해 밖 관제수역의 관제대상선박까지 확대하고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정보제공 시 통신 방법 등 세부 규정을 신설하며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안 제18조의2에 대해서는 영해 밖 관제수역의 관제대상선박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대체토론 부분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영해 및 내수로 한정하고 있어서 영해 밖 수역에서 항행하는 대형화물선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협약에 맞추어서 영해 밖 관제수역에서의 선박교통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데 자구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20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조문입니다.

개정안의 제3조제2항에 보시면 짚은 부분입니다.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이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영해 밖 수역으로서’라는 부분, 이 부분은 대한민국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영해 밖 수역의 범위가 국제협약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제18조의2제1항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21쪽입니다.

제3호의 내용은 기상법상 기상특보로 더욱 명확하게 했고요. 제2항은 어순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항은 준용하는 사항이 제15조 전체가 아니라 15조 제1항만이기 때문에 제15조 1항만 준용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개정안은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의 의무이행 대상을 ‘선박교통관제’에서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로 명확하게 하고 선박교통관제관서 즉 VTS에 신고해야 하는 시점을 관제구역에 출입할 때뿐만 아니라 관제구역에서 항행·정박·계류하는 등까지 신고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관제구역에 출입할 때뿐만 아니라 관제구역에서 항행·정박 또는 계류시설 도착할 때도 VTS에 신고할 필요가 있고, 선박이 해상에서 정박·정류하는 경우에도 충돌·좌초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관제통신에 청취하고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네모입니다. 다만 안 제14조제5항은 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수범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의 주체를 항행 중인 관제대상선박 선장으로 한정하고, 신고대상의 공간적 범위도 선박교통관제구역 내의 항로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 안 제14조제1항 본문 중에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18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로 수정하고 선박교통관제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는 시점을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그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폐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여 간결·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관제통신 원칙을 신설하고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오른쪽 부분입니다.

관제통신 원칙을 신설하는 내용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해양사고 발생 시 보다 정확한 사고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개정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대상을 항행, 정박, 정류하는 관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선박입출항법에 신설된 내용을 반영하며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하단입니다.

선박교통관제사의 업무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국제지침과 타 입법의 개정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경과 조치는 선장의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와 관계된 사항으로서 해당 규정이 현행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의 경과조치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전문위원 검토와 수정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주 위원님.

○**주철현 위원** 영해 밖에서 지금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도 관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제가 보기엔 항행하는 선박들에 대해서 영해 밖에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지시를 하고 통제를 하고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외국 선박도 그렇게 할 권한이 없잖아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말씀대로 영해 밖에서 관제 정보, '선박이, 어선들이 많다, 조심해라'라고 하는 정보만 제공하지 거기서 지시 명령을 안 따랐을 때는 가별 조항은 없습니다. 영해 내에서 특정한 수역에서 지시를 안 따랐을 때 그렇고 영해 밖에서는 정보 제공, 임의적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주철현 위원** 법에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법을 다 정확히 못 봐서 그러는 건데……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영해 밖에서 관제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없습니다.

○**주철현 위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그렇습니다.

○**주철현 위원** 전문위원님, 그래요?

○전문위원 임재금 예, 맞습니다. 영해 밖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 정보 제공만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국내 연안국에서.

○전문위원 임재금 18조의2의 규정만 적용하도록, 제3조의 적용 범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서 위원님.

○서천호 위원 청장님, 27페이지 보시면 관제통신 녹음·보존 의무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녹음한 보존 기간이 지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행법이?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자체적으로 60일 보존 기간입니다.

○서천호 위원 60일 보존 기간이에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서천호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다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보존 기간을 좀 줄이는 것으로 조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사실상 해상사고라는 것은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사고거든요. 관제통신을 60일 동안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위원님, 해상에서 여러 가지 안개가 끼었을 때 또 무중일 때 선박이 한 척은 선박이 전복된 가운데서 충돌, 도주 선박이 생겼을 때에, 국외 선박이 생겼을 때에 저희들 수사가 장기간이 걸립니다. 통상적으로 해상에서는 발생과 동시에 인지를 하는 게 보통 통상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적 선박이 여러 가지 공해상에서 항해 중에 우리 어선을 충돌하고 좌초가 됐을 때, 전복이 됐을 때 그 선박이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일본을 기항했을 때 수사가 자연이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이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수사상 필요하다, 보존 기간이?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서천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아직도 중요한 법안이 또……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9)

(11시30분)

○소위원장 조경태 의사일정 제14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재금 3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교육 수행 능력을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으로

추가하고 수상구조사의 자격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의 첫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개정안은 수상구조사의 업무역량을 실제 업무에 맞게 확대하고 자격등급을 세분화하여 수상구조사 자격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수상구조사의 안전관리라는 부분은 너무나 광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의 예방 활동 등으로 한정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 입법례에 따라서 수상구조사의 등급별 업무수행 범위에 대해서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수상구조사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을 통일적으로 산정하고 보수교육의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네모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별 수상구조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시점에 따라서 다음번 보수교육 기간에 차이가 계속 발생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있고 보수교육의 주기가 짧아 수상구조사의 자격 유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사항입니다.

42쪽입니다.

안 부칙 제1조는 법 시행 준비기간 등으로 1년을 부여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민간단체가 발급한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자격인 수상구조사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수상안전 분야 자격이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국민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분야는 국가자격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수상구조 인력 자격을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민간 자격증 소지자가 특례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 어떤 등급의 자격을 부여받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등급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3쪽입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수상구조사 자격을 발급받은 자에 대해서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전문위원 검토와 수정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현 위원** 청장님, 누차 드리는 말씀인데요. 수상구조사가 수중에서는 활동 못 합니까?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수중에서 활동을 합니다. 구조 업무에 수상, 수면 불구하고……

○**주철현 위원** 그런데 왜 수상구조사 이렇게 했어요? 수상, 수중 다 해서 포괄하는 명칭을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수상이라 하면 바다에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수중, 수상, 수면까지 다……

○**주철현 위원** 그런데 왜 수중 레저에 대해서는 관할이 없어서 안 하는 것처럼 자꾸 빼고 그러세요? 맡아서 하셔야지.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수중도 저희들이 안전관리사무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현 위원**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아직 업무 협의가 안 끝났어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거의 끝났습니다.

○**주철현 위원** 거의 끝났다고……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정책 업무는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안전관리업무는 해양경찰에서 하는 거지요.

○**주철현 위원** 아니, 그것 법을 빨리 내세요.

○**해양경찰청장 김종욱**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해수부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주철현 위원** 예.

○**소위원장 조경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여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조경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15.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

○**소위원장 조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입법공청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공청회는 오늘 법안소위 회의 중에 실시하고 진술인으로는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본부장 등 세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진술인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16.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에 대한 공청회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4시04분)

○소위원장 조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진술인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청회는 먼저 진술인분들의 발제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공청회의 취지를 감안하여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 진술인 등의 진술 요지 관련 법률안 등에 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의 마창모 본부장님이십니다.

부경대학의 박수봉 교수님이십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승용 책임연구원이십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청회에 정부 관계자로서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진술인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분께서는 7분 이내의 범위에서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진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마창모 본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마창모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산연구본부장을 맡고 있는 마창모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양수산법안소위원회 조경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입법조사관님, 전문위원님, 보좌관님, 비서관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수산물 유통·가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전 국민이 어디서든 신선한 수산물을 사실은 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산물은 선도·위생이 가장 중요해서 사실 대면 거래가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대면 거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계가 온전히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상품화의 결여에 있습니다. 이 상품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도 관리와 위생 관리인데 그 시작점이 생산과 생산 직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와 생산 직후 하역 또는 출하 단계에서 제품화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때 유통 기간이, 긴 처리 시간으로 선도가 저하되거나 위생 관리가 미흡하면 그 이후의 유통 관리 시스템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사실은 제값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 단계부터 표준화된 유통 기자재가 사용되어서 소비자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만 이 수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산업계의 가장 약한 고리가 생산 단계와 생산 직후 단계의 선도 관리입니다. 여전히 바닥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나무상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원인이 우리나라 수산업 그리고 수산물 유통 특성에 기인한다고 하기에는 지금 세계적인 수산 환경이나 기술개발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법안이 수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한계를 기자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다양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후변화로 한반도 어장지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콜드체인 시스템이 모두 개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제 규범이 강화되면서 인증제도와 이력추적이 요구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새로운 유통·가공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소포장 제품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선도 유지를 위한 가공, 유통, 포장, 배송, 소비자 안심과 친환경 소비를 위한 기술과 기자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산업 유통·가공업은 위생 관리, 선도 유지, 식품 안전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공, 보관, 배송, 포장 등의 물류, 상품화 등의 활동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가공 기자재가 필수적입니다.

법적으로 수산물 가공업·유통업은 수산업에 포함되어 있고요. 유통·가공 기자재는 수산물 유통업·가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자재 시장만 보면 조금 작아 보이지만 23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통계들을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조사 목적, 조사 항목, 분류 체계 등에 따라서, 이런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상이해서 이 연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도 보입니다. 이는 수산기자재산업의 영역과 경계 설정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조사상의 한계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수산기자재 정책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유통발전 기본계획을 통해서 위생 및 안전 관리, 물류 효율화 정책을 강

화하기 위해 재순환 어상자 보급, 위판장 현대화 등 유통시설 개선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쪽을 놓고 보면 과거에는 특정 품목 및 장비 등 요소별 기술개발을 중점으로 했다면 지금은 스마트기술 접목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하는 기반구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정책과 기술개발이 추진되고 있지만 몇 가지 한계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 기본법, 육성법 등 유관 법률의 개별 조항에 명시적으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산업의 포괄적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성격상 수산물 유통·가공 기자재의 보급, 인증, 사후관리와 같은 필수 제반 사항에 대한 법률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통·가공 기자재는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산업계의 수요가 뒷받침되어야 산업화로 이어지고 다시 신기술을 개발하려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형 식품·유통업체를 제외하고는 수산업계의 고착화된 유통·가공 관행과 기자재 산업의 영세성으로 인해 기자재 활용 수요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동법의 효과를 보면 수산업 전주기 관리정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외환경 변화에 지속적인 기술적 대응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자재를 통한 수산물 유통·가공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수산기자재산업이 수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의 한 축으로 정착하도록 돋는 중요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동 법안 2조에 따르면 여러 법률에 걸쳐 관리되던 수산 유통·가공 기자재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 유통, 가공, 소비를 연결하는 수산업 전주기 정책 추진에 필수적인 기반이 되어 수산업 전반에 걸친 기술 연계성을 높이고 수산기자재에 집중된 지원과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책 대상과 범위 설정에 있어 유통·가공 기자재의 경우 그 종류가 방대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국내시장의 여건을 놓고 보면 수산물 유통·가공을 위한 기자재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미래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은 기존의 자원, 값싼 인건비와 환경이 아니라 기술적 비교우위가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는, 미국은 소이어(Sawyer)라는 로봇을 개발해서 어류의 신선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개발한 가리비 가공로봇은 숙련공 11명이 작업하는 양과 같이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아이슬란드의 대표 기업인 마렐 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기술을 활용해서 정확한 뼈 위치를 파악하고 자동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무게 자동계측을 통해서 정확하게 필렛을 절단하는 기계장비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노르웨이는 육상 가공뿐만 아니라 선상 가공에 걸친 폭넓은 가공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반…… 우리나라에 우수한 기술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 기술들을 활용하고 융합해서 이런 수산기자재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우리나라의 어류, 고등어를 수입하게 되면 전처리를 위해서 동남아로 다시 수출합니다. 동남아에서 전처리를 하고 난 뒤 다시 가져와서 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전처리와 관련된 기술개발도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하자면 이 법은 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유통·가공 단계와 그 기자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산기자재 범위에 유통·가공 기자재를 꼭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타당해 보입니다.

수산업의 규모화, 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산기자재의 범위에 이를 포함시키고 육성하는 제정안에 동의하는 바이고요. 표준화, 품질인증, 사후관리, 임대사업, 신기술 수출 지원, 인력 육성, 정보화, 클러스터 조성 등과 같은 제정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전방산업 지원 강화, 전주기 관리 도입,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수봉 교수님께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분 내로 시간을 맞춰 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박수봉** 안녕하십니까?

부경대학교 박수봉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 농해수위 전문위원님, 보좌관님, 비서관님들과 수산기자재의 선진화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법안의 발의가 우리나라 수산기자재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하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선법상의 어선기자재의 종류와 관리체계, 본 법안과 어선법령과의 비교, 본 법안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어업의 현황과 첨단 어업기자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 공급원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 식량 공급에 기여하는 등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고 현재는 다양한 변화의 흐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연근해 어업에서는 기후변화, 수산자원의 고갈과 어획량 감소, 어업인들의 고령화, 어촌 공동화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마트 어업 기술의 도입, 에너지 절감형 및 어업작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비 보급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어업 중 연근해 어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하면 수산자원의 고갈, 어업 종사자들의 고령화, 기술 및 기자재의 노후화, 저소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이 접목된 기자재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첨단 기자재는 자원의 남획 방지, 어업의 생산성 향상, 어업 노동강도 감소 및 안전을 확보해 젊은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첨단 어업기자재 개발을 위한 발의 법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업은 노동집약적 방식이 대부분으로 이것은 결국 노령화 문제와 맞물려 노동력의 지속적인 감소, 나아가 수산업 및 어촌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업 관련 첨단 기자재의 산업 진흥과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해서 첨단 기자재 도입과 개발의 저해 요인이 되어 어업과 어촌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 전문가님들의 노고로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어업기자재를 총망라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어업인이 필요한 기자재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 확대와 이로 인한 첨단 어업기자재 개발 수요를 발생하게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안입니다.

어업 관련 기존 법률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률로는 수산업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어촌·어항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업 관련 대표적인 이 세 가지 법안은 모두 수산업 정책, 어촌 정책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안 모두 어업인들이 매일 사용하는 기자재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산기자재법은 어업의 기자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따라 기존 법안들에 비해 어업인들의 생활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법안들이 다루고 있지 않은 분야에 세밀한 정책적 효과를 투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기존 법안들의 목표인 어업인 지원 및 복지 강화를 구체적 방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들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어업기자재와 관련한 항목과 예상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논의 중인 수산기자재법 제2조(정의)에서는 수산기자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중 어업과 관련한 것은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수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두 가지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법안 발의 이후라도 계속해서 수정되고 발전되어 가겠지만 발의 이전에 미리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업기자재 중 어선과 관련한 것입니다.

어선은 어업을 대표하는 기자재로서 수산기자재법의 정의에 비추어 봐도 동법의 정책적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 관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어선은 대규모 설비이자 자산으로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선이 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 어선에 설치된 다양한 기자재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기자재의 구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업기자재와 기술적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선은 설계와 기술적 요구사항이 복잡하므로 수산기자재의 개발 및 지원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선은 이미 어선법이라는 법률과 규정에서 다양한 규제 및 지원체계를 통해 관리되고 있기에 이를 수산기자재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중복 관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업기자재와 관련된 예상 쟁점으로 두 번째로는 수산물의 생산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업에 있어서는 조업 시간보다 조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행위는 조업 준비시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예상 쟁점 사항 중 어선의 중복 관리에 대한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선은 어선법 제3조에 따라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선의 설비에는 항해, 통신, 전기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들은 설치 전 그리고 설치해서 운영 중 그리고 설치 후에도 작동 상태와 성능 등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받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선의 설비에 대한 사항은 해당 법률을 통해 지속 관리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법률체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선법 제3조의 7호 어로·하역설비의 경우에는 하역설비의 기준은 있지만 어로설비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산기자재법이 다루는 어업기자재의 범위에 어선과 관련한 설비는 제외되어 어선에 설치되는 어로설비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법령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 저의 마지막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법안은 우리나라 수산기자재산업의 토대가 되어 어선 관련 어로설비와 각종 수산기자재의 기술력 향상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률의 통과와 산업화는 어로어업 및 수산업 분야의 생산성, 경제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법안 발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수산업이 직면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본 법안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용 연구원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오승용입니다.

오늘 저는 수산업의 발전과 식량안보에 양식업 및 양식기자재가 가지는 중요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기자재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과 양식산업발전법에서 다루고 있는 양식업 및 양식기자재 범위의 차이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과 기자재 범위의 적정성, 법안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양식업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식업의 현황과 본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양식업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지고 있으나 전후방 산업 등 질적 성장은 더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 수산 및 양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양식 생산량은 51%를 차지해 자연산 어획량을 넘어섰고 우리나라 해면양식업 역시 2023년 기준 국내 어업별 생산량의 61.7%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과 중요성은 매우 크지만 인구 감소,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한 해면양식 피해 증가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외의 경우 양식수산물의 생산 방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 첨단 양식기술의 패키지화를 통해 다양한 문제점에 대처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양식업은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그 질적인 성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저숙련·저임금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어업인들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능이 미흡하거나 우리나라 여건에 적절하지 않으며 유지관리가 힘든 양식기자재 사용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양식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양식기자재의 개발 및 활성화를 통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내 기자재산업의 육성·보호 및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양식산업발전법의 경우 양식산업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통해 양식 생산을 최적화하고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둔 법안입니다.

오늘 논의 중인 수산기자재법의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양식환경요소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프라, 즉 양식기자재, 장비 및 운영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기자재 의존도가 높고 적절한 환경관리가 필수적인 양식업의 경우 본 법안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경우 다양한 양식기자재 및 운영 소프트웨어, 양식기술 서비스업체들이 세계적인 양식기업의 성장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후방산업이자 미래먹거리인 기자재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의 각 조항은 국내 수산기자재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내용들로서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양식기자재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개발, 보급 촉진, 품질, 사후관리, 수출 및 산업단지 조성 조문 모두 양식기자재 산업화와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산기자재 임대사업 조문은 여성 및 고령 어업인에게 양식업의 노동력 대체는 물론 취약계층의 생업을 지속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기술 기자재 개발 및 보급 촉진 조문은 양식기자재의 국내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및 스마트농업 육성법의 농업 사례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법안의 주요 조문인 양식기자재 표준화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위원회의 어업 및 양식업 분야의 수산 및 양식 분야의 표준화, 용어, 장비 및 운영에 대한 기술 사용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품질인증 표준화 및 사후관리는 기자재 품질 향상과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생산비용의 절감 및 사용자들의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국내외적 경쟁력 확보에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기술도 보유한 만큼 앞으로의 양식업이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는 데 오늘 논의하는 수산기자재법 제정이 산업적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심 조항 중 양식기자재 적용 범위 중 양식용 사료와 약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양식용 사료는 양식산업발전법의 제2조 3항에서 사료와 기자재를 별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사료관리법의 제2조와 제3조에서도 양식용 사료를 법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 사료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책 마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사료의 사용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문제임에 따라 사료관리법은 해당 조문 이외에도 전체 법안에 걸쳐 사료의 유해성 검사 등에 관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양식산업발전법과 사료관리법이 이 법안의 범위에 양식용 사료를 포함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엄격한 관리나 지원·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수산기자재법에서는 양식용 사료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양식용 약품 역시 국내에서 수산용 약품의 오남용 우려와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 때문에 약사법과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 규칙에 의해 국립수산과학원의 품목 허가를 받은 약품만 사용됩니다. 양식용 약품 또한 양식업의 필수재이지만 국민건강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수산기자재법 범위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수산기자재법은 우리나라 양식업의 현안을 포함한 양식기자재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확보와 함께 유사 분야인 농업 분야의 기계화와 스마트화 제도를 반영한 법안으로 앞서 말씀드린 적용 범위를 수정한 제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본 법안이 입법된다면 우리나라의 수산양식 분야의 식량안보 확보, 기후변화 및 환경 오염 대응은 물론 양식기자재산업의 국내외 및 미래 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소위원장 조경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송옥주 위원 이게 제정법이어서 공청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제정법을 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하면서 찬반,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조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의 패널들이 참석을 하셔서 진술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세 분 참석하신 마창모 본부장님과 박수봉 교수님, 오승용 책임연구원님은 다 이 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찬성을 하시는 거고 수산기자재의 범위와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

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술인 박수봉 예, 맞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서 약간 다들 똑같은 의견으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부분이어서 이 공청회가 약간 설계 자체가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있기는 하고요.

구체적으로 7분의 진술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세 분이 이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조문 중에서 정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건가요?

마창모 본부장님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 중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더 범위가 광범위하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하고 현실적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신 거고요?

○진술인 마창모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가 넓어서 어디를 좀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진술인 마창모 사실 우리나라의 가공유통이 굉장히 발전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주문을 하면 집 앞까지 배송이 오지요. 그래서 어떤 유통기자재산업이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유통기자재산업은 놔두더라도 저희들이 범위로 놓고 볼 때는 수산물이 생산되면서 하역 직후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대기업들이 하는 라인에 타기 전 단계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재에 집중을 하되 문제는 지금 국제규범에서 원하는 것들이 생산물의 환경·생태·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소비자까지 이력추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들이 생산부터 소비자까지 가는 과정에 어떤 일반적인 표준화된 기자재들이 담겨서 가야 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범위를 무한정 늘리기보다는 저희들이 환경규범과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도관리지요, 선도관리와 환경규범을 국제규범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기자재를 소비자까지 가되 범위를 조금 좁힐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위원님 여러분 또 말씀 주십시오.

○주철현 위원 먼저 하세요.

○서천호 위원 마이크가 먼저 켜져서……

○소위원장 조경태 사이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가나다 순서대로 서천호 위원님.

○서천호 위원 마창모 본부장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법안 취지가 연근해어업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원양어업까지 다포함하는 건가요?

○진술인 마창모 지금은 원양어업·연근해 수산물이 국내에 하역돼서 들어오는 모든 상품, 국내 시장 되는 모든 상품이 포함된다고 봅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예컨대 제가 하나 사례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한 마리 잡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오징어를 잡아서 소비자까지 오는 패턴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패턴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한번 실제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진술인 마창모** 지금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농업기계화법 관련해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이런 기자재의 지원사업과 임대보급사업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 쪽에서도 오징어가 들어오면 홀어차를 타고 다시 횟집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사실 관련 장비들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실제 시장이 적다 보니까 그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사실 영세하고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그런 보조사업들이 지원 가능해지고 이런 임대사업들도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면 현재 프로세스, 절차는 큰 변화가 없는데 지금 기자재 사업하시는 분들의 영세성이나 이런 것을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 법을 통해서. 그게 가장 큰 이 법의 효과라는 얘기인가요?

○**진술인 마창모** 저는 이 유통가공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다른 두 분, 발제하신 분 한번……

이 법의 목적은 기재가 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이 법에서 추구하는 의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해안에서 오징어를 생산했어요. 생산해서 지금 소비자까지 오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면서 어떤 유익한 부분이 발생하냐는 얘기입니다.

○**진술인 박수봉**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부경대학교 박수봉입니다.

오징어를 잡는 방법은 채낚기 방법 그리고 서해에서 자망 그리고 또 트롤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선에는 또 어구를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들, 양방기와 같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는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어업 프로세스가 바뀌는 점은 없고요, 어선을 제외한 어업장비들, 양방기 이런 장비들을 조금 더 어민들한테 인증되고 품질이 좋은 장비들을 보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을 통해서 영세한 어업인들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그러시면 채취하는 과정에, 오징어를 잡는 과정에 기계의 표준화라든지 고급화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많은 어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차원인가요?

○**진술인 박수봉** 예, 그거는 제가 2주 전에 제주도 출장을 갔었는데요. 제주도 근해 유자망어선에서 양방기 긴급정지장치라는 해양수산부 2021년에 소득복지과 보급했던 그 장치를 달고 싶어 하는 어선이 있었습니다. 그 어선은 그 당시에는 지원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주께서 자부담 1000만 원을 부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 돈을 내서 양방기 긴급정지장치를 단다고 하셨는데 이 장치를 달고 나서 사용을 해보니 인력이 저감되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급 사업이나 기자재 표준이 잘 되어 있었더라면 이 어민들도 사전에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이런 법이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받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부담도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서천호 위원** 어로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현대화된 장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혜택을 볼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법의 통과를 통해서 결국은 어로작업의 과학화·현대화를 통해서 안전도 보장하고 또 어민들의 소득도 높이자, 그런 효과가 있다는 얘기지요?

○**진술인 박수봉** 예, 맞습니다.

○**서천호 위원** 우리……

○**진술인 오승용** 저는 양식기자재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양식현장에서 많은 기자재가 사용되고 있지만 품질인증을 거친 제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조금 성능이 미흡하거나 하는 그런 중국산 제품이라든지 아주 고가의 유럽산 기자재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성능이 미흡한 기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후관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장비를 또 구해야 되는 이중적인 경비 지출이 또 되고 있고요. 또 고가의 기자재 역시 사실은 그 지역에 맞는 양식품종에 맞는 기자재가 개발돼서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건에 안 맞는 성능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또 품질인증이 된 기자재를 보급할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 양식기자재 사업을 하시는 분 역시 그런 수출과 동시에 수입에 대한 보호 역할도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식업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뿐만 아니라 이 사업자들 역시도 이 법을 통해서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천호 위원** 기자재 표준화라든지 소위 말하는 기술력을 확보해서 양식 어민들의 소위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은 제가 동의를 하는데 기자재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자 하는 것처럼, 그게 먼저 주장이 되어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오승용** 그냥 부가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서천호 위원** 그래서 부수적인 측면이 그렇다면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이 먼저 부각이 된다면 법 취지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부분인데.

어쨌든 정리를 하자면 어민들 소득에도 상당히 필요한 법이고 또 표준화라든지 그간의 중구난방이 된 절차를 좀 정비를 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진술인 오승용**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주철현 위원님.

○**주철현 위원** 세 분들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상당히 이상적인 법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산업, 어촌 현실에서 필요한 법은 이 법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시급한 법들이 많는데, 예를 들면 지금 어족자원의 고갈 또 에너지 비용 상승, 고임금, 물가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상 표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필수 어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이런 비용과 관련된 정부 지원, 지자체 지원이 훨씬 더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화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살 돈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몇몇

기업적인 어업들만 이익을 보는 것이고.

또 양식 현장에서 아시겠지만 고수온 피해, 저수온 피해, 적조 피해 아래 가지고 우리나라 양식업들이 대부분 다 지금 고사 지경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수산업이 제대로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도산 위기에 처해 있는 형국에서 이걸 표준화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마치 석유화학 산단이 지금 국제경쟁력이 없어져 가지고 도태위기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 탄소중립이니 뭐니 이렇게 지금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서 제가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세 분들이 전문가들이라면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적을 좀 해 주실 줄 알았는데 한결같이 필요한 법이다,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하셔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와 관련된 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필수 수산 기자재 육성이 필요하다면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이 꼭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화중지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된 세 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차례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술인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마창모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장 직면하고 있는 수산업계 현실이 굉장히 암울하고 힘든 게 현실이고 저도 공감합니다.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선시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미래의 세계 수산업은 이런 과학기술 기자재의 비교우위가 식품산업 비교우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기자재산업이 과연 어느 정도 위치인가는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자재법이 앞으로 미래에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리고 기온변화 때문에 기온이 올라간 상황에서 콜드체인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어상자 하나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없이 어업인들이 제값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업인들이 제값을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생산 이후에 그런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선도 관리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쪽의 기자재들이 시급하게 좀 많이 보완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습니다.

#### ○주철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자재 표준화 중요해요,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표준적인 기자재가 개발이 돼도 그것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나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걸 지원해 줄 수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표준화하고 무슨 클러스터 조성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고요. 수요자들이 살 여력이 없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표준화하되 그와 관련돼서 정부 지원을 의무화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와 관련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거지요.

#### ○진술인 박수봉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박수봉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어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어민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이런 표준화된 수산 기자재를 보급하는 것보다는 외국인 선원 1명을 더 쓸 수 있게 해 주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어업이 젊은 세대들은 기피하는 직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젊은 선원들이 계속해서, 젊은 사람들도 첨단장비를 가지고 재미있게 어업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나타난 수산물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수산부나 정부에서는 보급사업이나 아니면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강력하게 함께 연관이 시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에 위원님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 법이 통과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예산당국의 협조도 많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큰 힘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아니, 자꾸 말 돌리시지 마시고요. 이 법 필요한 줄 안다니까요. 입법 내용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표준화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정부에서 지원해서 어민들이, 수산인들이 그 기자재를 사서 수산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말은 쏙 빠져 있잖아요.

표준화 사업만 지원한다고 돼 있지 정작 필요한 어민들이나 수산인들이나 수산가공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정부 지원을 어떻게 받아서 그 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나는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표준화·기계화·스마트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한 거지요. 지금 농업과 마찬가지로 수산업도 1차 산업이고 우리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서 그런 부분도 이 법안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만점일 것 같은데 그 말씀은 끝까지 안 하셔서 좀 답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용 연구원님께서 좀 제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진술인 오승용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오승용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은 지금 양식업에서 현안으로 많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들 때문에 양식어가에 많은 피해도 생기고 자기들 소득에도 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들에 양식기자재산업의 발전이 같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방안들이 기자재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을 통해 가지고 향후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양식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자재가 개발되고 표준화돼서 좋은 장비가 또 만들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어가에 공급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지원책, 그러니까 임대를 조금 더 저리로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복안들이 같이 법안에 실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양식에 종사하시는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철현 위원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문 위원님.

○문대림 위원 주철현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하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어쨌든 어업의 IT화·스마트화 이제 대세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학기술 기자재의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겠고 제도에 담아내야 될 게 지원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정부 지원에 관한 내용들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어쨌든 저는 사실 공공 주도보다는民間 주도로 이걸 이끌고 나가야 결국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民間 주도로 가려고 하면 지금 자체 경쟁력들이 없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안의 내용들에 보면, 물론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좀 욕심을 내서 신기술 수산 기자재인 경우에는 지정·고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조금 더, ‘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갔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주철현 위원님에게 어민 수요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도 아쉽지만 궁극적으로 이 법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책무 규정도 지나치게 약하게 다가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 육상양식을 많이 하거든요. 육상양식의 한 70%가 제주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제주도 광어 양식장 가 봤습니까?

○진술인 오승용 예.

○문대림 위원 어떻습니까? 경쟁력 있습니까?

○진술인 오승용 점점 어렵다 하는 사정……

○문대림 위원 어렵다?

○진술인 오승용 예.

○문대림 위원 경영비의 문제 또 고수온의 문제 이런 것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표준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지요?

○진술인 오승용 예, 절대 공감합니다.

○문대림 위원 관련해서 접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어느 분이든 한번 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오징어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산 며르치 먹어 본 사람 있습니까?

○진술인 박수봉 예.

○문대림 위원 먹어 봤습니까? 어떻게 먹어 봤지요?

○진술인 박수봉 제가 추자도 출장을 많이 갔는데 추자의 멸치액젓이 전국에서 제일 좋은 멸치액젓이라고 추자에서……

○소위원장 조경태 아닙니다. 제주도가 아니고 남해인데……

○문대림 위원 왜 그러십니까, 위원장님? 제주도에……

그건 액젓이거든요. 액젓 맛있지요. 제주 가면 돼지고기를 멸치액젓에 먹으면 끝내 주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저는 건멸치, 마른 며르치를 먹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제주 바다에 멸치 납니까, 안 납니까?

○주철현 위원 안 나요.

○문대림 위원 주철현 위원님께서 ‘안 나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먹어 보지를 못 했거든요. 왜, 며르치가 있으면 제가 선물도 했을 텐데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특히 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반성할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생각돼요.

제주 해역에 ‘멜 들었다’ 해 가지고 멜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액젓용으로 쓰기는 하지만 며르치를 못 만들어요. 왜 못 만들지요? 물론 멸치를 며르치로 못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멸치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며르치로 만들어서 아주 값어치 있게 팔릴 수 있는 멸치들이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며르치로 못 만들고 있다. 왜 그러지요? 왜 못 만들지요?

제주산 며르치를 먹어 본 분이 있느냐고요, 해양수산 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인데?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먹어 봤습니까?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언제 먹어 봤습니까?

(방청석에서 — 「제가 집이 남해거든요. 제가 위원님 바로 옆 동네 사는데, 삼천포에 제주도 멸치 입항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며르치를 먹어 봤다고요?

(방청석에서 — 「예, 제가 멸치 한 40년 잡았는데요」 하는 이 있음)

○소위원장 조경태 문 위원님, 빨리 정답 말씀해 주시고 마치지요.

○문대림 위원 제주산 멸치 없어요.

(방청석에서 —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어요.

(방청석에서 — 「위원님, 이상하게 생각하시네. 멸치 위판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멸치는 잡는 즉시 삶아야 되잖아요. 선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방청석에서 — 「그렇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주산 해역에서 잡아 가지고 어디서 삶아요?

(방청석에서 — 「그거 어장망에서 삶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방청석에서 — 「잡는 위치에서 삶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잡는 위치에 서요?

(방청석에서 — 「예」 하는 이 있음)

잡는 배, 가공하는 배 같이 가는 어업 허가가 무슨 허가라고 하지요?

(방청석에서 — 「그거는 선망어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는 이 있음)

권현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 근해에 지금 권현망어업 허가가 나 있습니까?

(방청석에서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잡는 배, 가공하는 배가 같이 못 가지 않습니까?

(방청석에서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주도의 연안에서 멸치를 잡습니다. 배가 잡는 것이 아니고요」 하는 이 있음)

잡아서 어디 가서 삶아요? 어디 가서 가공해요?

(방청석에서 — 「연안 자기 어장망에서 삶지요」 하는 이 있음)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멸치가 많이 잡히는 곳에 살거든요. 며르치 못 만들어요. 액젓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멸치산업을 죽이끌어오신 지역의 그분들의 노고도 저는 인정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바다에 많은 멸치가 있음에도 며르치로 가공해서 팔지 못하는, 산업화시켜내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권현망어업 허가를 둑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이유, 어족자원 관리·보호 때문에 둑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산업을 움켜쥐고 있던 지역세 때문에 둑인 것도 있을 것이다, 한 번쯤 고민해 봐 주시고요. 제가 이제 농해수위에 새로 왔으니까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서 얘기하면 제가 그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죽이루어지고 있는 고등어 위판 있지 않습니까. 국내산인 경우에 주산지가 어디입니까, 박수봉 교수님?

○진술인 박수봉 제주도……

○문대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위판됩니까?

○진술인 박수봉 부산에 와서……

○문대림 위원 97% 이상이 부산 가서 위판되지 않습니까.

○진술인 박수봉 예.

○주철현 위원 아니, 요즘은 여수로 50% 이상 와요.

○문대림 위원 여수로 안 갑니다.

○주철현 위원 여수가 가까우니까 그런다니까, 부산은 멀어서.

○문대림 위원 앞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주철현 위원 보내 주세요.

○문대림 위원 물론 부산에 가서 위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유통망 같은 경우에 부산이나 제주나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산업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위판이 제주도에서 이루어진다면 450km 이동해 가서 위판할 게 아니라 40km, 한 35km만 와서 위판하게 되면 달라지는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이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격적인 내용을 담아낼 필요 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서천호 위원 1분만……

○소위원장 조경태 1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서천호 위원 존경하는 주철현 위원님하고 문대림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자재 현대화 또 표준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을 어가에 전가시켜서는 곤란하다는 거지요. 아까 주철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면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기는 하고 또 미래의 우리 수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로 인한 부담을…… 우리 어민들이 다 영세하잖아요. 이 법으로 인해서 그 부담을 어가에 전가시켜서는 안 된다, 이 부분 꼭 명심을 해 주십시오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조경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법 3장 제8조제2항에 보면 “신기술 수산기자재를 생산하거나 구입하려는 자에게 그 생산이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나 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위원 ‘하여야 한다’로 해야 됩니다, 이것.

○소위원장 조경태 ‘한다’도 좋지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세 분 진술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 진술해 주신 의견과 오늘 토론하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마창모 본부장님, 박수봉 교수님, 오승용 연구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 ○출석 위원(5인)

문대림 서천호 송옥주 조경태 주철현

### ○출장 위원(1인)

이병진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전문위원 최선영

전문위원 임재금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부

차관 송명달

수산정책실장 김현태

정책기획관 류종영

해양정책관 김용태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

해양경찰청

청장 김종욱

기획조정관 안성식

경비국장 여성수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 ○출석 진술인

마창모(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장)

박수봉(국립부경대학교 교수)

오승용(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